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28일, 강대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2024.11.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7차 국방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대식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고 있음.

이는 소요제기된 전력에 대한 소요결정 단계에서 작성하는 전력소요서(안)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라는 순차적 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대기 소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소요제기-선행연구-소음검증’ 등을 통합하는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6.8년 소요→2.7년 목표)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성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류승우)

- ☐ 현행은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소요결정 단계에서 작성하는 전력소요서안의 내용과 선행연구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라는 순차적 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대기 소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개정안은 소요결정 과정에서 분석실험, 선행연구, 소요검증을 현행의 순차적 방식이 아닌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상호 기능별 순환·환류를 통한 수정 등을 거쳐 최종 소요를 결정하게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체계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무기체계 획득절차 기간이 단축되고, 중복되는 항목이 최소화되어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 및 방위사업 등 획득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결정의 완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방위사업법」에서 소요제기, 소요결정, 선행연구, 소요검증 및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 등 순차적으로 사업을 준비 및 추진하게 하게 하는 이유는 무기체계 확보에 많은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한 것이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긴급소요가 있거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요결정 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7조제1항 단서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소요결정 과정에서 분석실험, 선행연구, 소요검증을 현행의 순차적 방식이 아닌 통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